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고 제2026-63호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11월 11일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26. 8. 11. 법률 제21873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, 동법 제5조, 제7조제4항 및 제1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점검과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관리자의 안전관리시설 운영·유지에 관한 책무 명확화(안 제4조)

나. 안전관리 시설의 정기 점검 및 조치 의무 신설(안 제5조의2)

다. 관계기관 개선 요청 시 조치 및 통지 의무화(안 제5조의2)

3. 입법예고기간: 2026. 11. 11. ~ 2026. 11. 17.(7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6년 11월 17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(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(전화: 2147-3662, FAX: 2147-3956, e-mail: khjjj@songpa.go.kr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,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(www.council.songpa.go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